

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

전라북도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(경작, 시설물 설치)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. 6. 23.

전라북도지사



1. 공고내용 : 공유재산 무단 점유(경작 및 시설물 설치) 원상복구명령
2. 공고기간 : 2021. 6. 23. ~ 2021. 7. 7.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(전라북도청, 전주시청, 혁신동 주민센터)
4. 근거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,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
5. 무단점유 현황

위 치	소유자	행위자		위법사항
		성명	주소	
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3, 1254, 1255	전라북도	미상	미상	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

6. 기타사항

- 가.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제2항에 의거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위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투자금융과 담당자(☎063-280-3561, 386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